

규 정 입 안 서

1. 단과대학(학과)명 :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2. 개정규정 : 대학원 물리학과 내규
3. 개정(제정,폐지) 사유 : 2019학년도 일반대학원 내규 개정에 따른 학과 내규 조정 및 문구 수정
4. 개정의 주요내용
 - 가. 공개발표 폐지에 따른 전체삭제
 - 나. 대학원 내규에 따른 문구수정 및 조정

- 붙 임
1. 내규 개정표 1부.
 2. 대학원 물리학과 내규 개정 전문 1부.
 3. KHU/Ecole Polytechnique 복수학위제 운영지침 전문 1부.
 4. 학과교수회의록 사본 1부. 끝.

대학원장 귀하

내규 개정표

현행	개정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본 대학원 물리학과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및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대학원 물리학과 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과정) 대학원 물리학과에는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박사과정을 둔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입학시험</p> <p>제3조(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원 학과장과 그 외의 교수 4인의 총 5인으로 한다. 4인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단, 지원자 수에 따라 대학원 원칙에 의거하여 위원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p> <p>제4조(석사과정, 통합과정 전형기준) ①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서류심사 점수 100점과 면접 점수 100점의 총 200점으로 정한다. ② (서류심사 항목과 배점) 서류심사 항목과 배점은 학사과정 평균평점 100점으로 한다. ③ (면접 항목과 배점) 면접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공지식 및 창의력 30점 2. 영어능력 30점 3. 학문에 관련된 실적 20점 4. 특성평가 10점 5. 학업계획 10점 <p>④ (면접 점수 총점의 계산) 전형위원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 점수로 한다.</p> <p>제5조(박사과정 전형기준) ① 박사과정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서류심사점수 100점과 면접 점수 100</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현행과 동일</p> <p>제2조(과정)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입학시험</p> <p>제3조(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현행과 동일</p> <p>제4조(석사과정, 통합과정 전형기준) 현행과 동일</p> <p>제5조(박사과정 전형기준) 현행과 동일</p>

점의 총 200점으로 정한다.

② (서류심사 항목과 배점) 서류심사 항목과 배점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평균평점으로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 평균평점 30%
2. 석사과정 평균평점 70%

③ (면접 항목과 배점) 면접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지식 및 창의력 30점
2. 영어능력 20점
3. 학문에 관련된 실적 30점
4. 특성평가 10점
5. 학업계획 10점

④ (면접 점수 총점의 계산) 전형위원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 점수로 한다.

제3장 전공시험

제6조(시험과목) 전공시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의 전공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세부전공'과목으로 '공통과목'은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 I, 양자역학I, 통계역학I으로 한다. '세부전공' 과목은 고체물리학I, 양자장론I, 고급통계물리학 중에서 해당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박사과정의 전공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세부전공 1', '세부전공 2'과목으로 '공통과목'은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I, 양자역학I, 통계역학I 으로 한다. '세부전공 1'과 '세부전공 2'과목은 해당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세부전공 1'은 고체물리학I, 양자장론I, 고급통계물리학 중에서 '세부전공 2'과목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정한다.

제7조(출제) 전공시험의 출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공통과목은 해당 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수들 중, 대상 수험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했던 교수가 출제한다. 단, 교수가 강사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출제가 어려운 경우는 학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학위자격시험

제6조(시험과목) 학위자격시험은 공개발표와 전공시험으로 구성하며 전공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세부전공'과목으로 '공통과목'은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I, 양자역학I, 통계역학I으로 한다. '세부전공' 과목은 고체물리학I, 양자장론I, 고급통계물리학 중에서 해당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박사과정 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세부전공 1', '세부전공 2'과목으로 '공통과목'은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I, 양자역학I, 통계역학I 으로 한다. '세부전공 1'과 '세부전공 2'과목은 해당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세부전공 1'은 고체물리학I, 양자장론I, 고급통계물리학 중에서 '세부전공 2'과목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정한다.

제7조(출제) 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출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공통과목은 해당 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수들 중, 대상 수험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했던 교수가 출제한다. 단, 교수가 강사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출제가 어려운 경우는 학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의 '세부전공'과목과 박사과정의 '세부전공1'과목은 해당 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수들 중 대상 수험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했던 교수가 출제한다. 단, 교수가 강사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출제가 어려운 경우는 학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세부전공과목의 내용 난이도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③ 박사과정의 '세부전공2'과목은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출제한다. 단,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세부전공과목의 내용 난이도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다.

제8조(채점 및 합격 기준) ① 채점은 출제교수가 한다.

② 각 과목은 80/100점 이상을 획득함으로 합격한다.

③ 석사과정은 세부전공 1과목 및 공통과목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세부전공1&2 과목 및 공통과목 3과목 이상 합격해야 한다. 단,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세부전공과목의 합격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험 및 응시시기) ① 전공시험은 한 학기에 한번, 7월 마지막 금요일 혹은 1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한다.

② 모든 학생은 공통과목의 경우 입학한 첫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응시할 수 있다. 단, 세부전공의 경우 2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재시험) ① 석사과정의 경우 3기 이상이면서 50/100점 이상을 얻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 발표로부터 한 달 후 해당과목을 다시 보는 재시험의 기회를 한번 준다.

② 재시험의 문제는 원래 시험의 문제와 다를 수 있으며, 80/10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의 '세부전공'과목과 박사과정의 '세부전공1'과목은 해당 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수들 중 대상 수험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했던 교수가 출제한다. 단, 교수가 강사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출제가 어려운 경우는 학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세부전공과목의 내용 난이도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다.

③ 박사과정의 '세부전공2'과목은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출제한다. 단,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세부전공과목의 내용 난이도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다.

제8조(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채점 및 합격 기준)

제9조(시험 및 응시시기) ① 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은 한 학기에 한번, 7월 마지막 금요일 혹은 1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한다.

② 모든 학생은 공통과목의 경우 입학한 첫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응시할 수 있다. 단, 세부전공의 경우 2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③ 학위자격시험 중 공개발표는 학과장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재시험) 현행과 동일

제1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 ②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③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 ④ 기타 일반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1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SCI(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복수학위제

제13조(과정) ① 석사과정 중 복수학위제로 KHU/Ecole Polytechnique 복수학위제를 둔다.

② 복수학위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KHU/Ecole Polytechnique 복수학위제 운영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학과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편

제1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현행과 동일

제1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현행과 동일

제13조(학위청구논문의 대체)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위과정 동안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SCI(E)논문으로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청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1. 본교 박사과정으로 진학
- 2. 대체를 원하는 SCI(E) 논문의 주저자

② 주저자에 2인 이상의 석사과정 학생이 포함된 경우 해당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석사청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복수학위제

제14조(과정) 현행과 동일

제6장 학과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편

제14조(학과운영위원회) 학과운영위원회는 대학원 학과장과 그 외의 교수 2인의 총 3인으로 한다. 2인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제15조(교과과정의 검토)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국가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최소 4년에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10월 개정하여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10월 제정되어 2004학년도 전기 전형부터 적용된다.(제2장. 입학시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5월 개정하여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3장. 전공시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9월 개정하여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4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 삽입)

제 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9월 개정하여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5장. 복수학위제 삽입)

제2조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4월 개정하여

제15조(학과운영위원회) 현행과 동일

제16조(교과과정의 검토) 현행과 동일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10월 개정하여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10월 제정되어 2004학년도 전기 전형부터 적용된다.(제2장. 입학시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5월 개정하여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3장. 학위자격 시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9월 개정하여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4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 삽입)

제 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9월 개정하여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5장. 복수학위제 삽입)

제2조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4월 개정하여

<p>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4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 변경, 제5장. 복수학위제 변경)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장. 전공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4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 변경, 제5장. 복수학위제 변경)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장. 학위자격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도 적용된다.</p>
--	---

대학원 물리학과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 물리학과 내규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및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대학원 물리학과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대학원 물리학과에는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박사과정을 둔다.

제2장 입학시험

제3조(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원 학과장과 그 외의 교수 4인의 총 5인으로 한다. 4인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단, 지원자 수에 따라 대학원 원칙에 의거하여 위원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석사과정, 통합과정 전형기준)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서류심사 점수 100점과 면접 점수 100점의 총 200점으로 정한다.

② (서류심사 항목과 배점) 서류심사 항목과 배점은 학사과정 평균평점 100점으로 한다.

③ (면접 항목과 배점) 면접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지식 및 창의력 30점
2. 영어능력 30점
3. 학문에 관련된 실적 20점
4. 특성평가 10점
5. 학업계획 10점

④ (면접 점수 총점의 계산) 전형위원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 점수로 한다.

제5조(박사과정 전형기준) ① 박사과정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이 서류심사점수 100점과 면접 점수 100점의 총 200점으로 정한다.

② (서류심사 항목과 배점) 서류심사 항목과 배점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평균평점으로 다음과 같다.

1. 학사과정 평균평점 30%
2. 석사과정 평균평점 70%

③ (면접 항목과 배점) 면접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지식 및 창의력 30점
2. 영어능력 20점
3. 학문에 관련된 실적 30점
4. 특성평가 10점
5. 학업계획 10점

④ (면접 점수 총점의 계산) 전형위원 점수의 평균값을 면접 점수로 한다.

제3장 학위자격시험

제6조(시험과목) 학위자격시험은 공개발표와 전공시험으로 구성하며 전공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① 석사과정 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세부전공’과목으로 ‘공통과목’은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I, 양자역학I, 통계역학I으로 한다. ‘세부전공’ 과목은 고체물리학I, 양자장론I, 고급통계물리학 중에서 해당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박사과정 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과목은 ‘공통과목’과 ‘세부전공 1’, ‘세부전공 2’과목으로 ‘공통과목’은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I, 양자역학I, 통계역학I 으로 한다. ‘세부전공 1’과 ‘세부전공 2’과목은 해당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세부전공 1’은 고체물리학I, 양자장론I, 고급통계물리학 중에서 ‘세부전공 2’과목은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정한다.

제7조(출제) 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출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공통과목은 해당 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수들 중, 대상 수험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했던 교수가 출제한다. 단, 교수가 강사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출제가 어려운 경우는 학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의 ‘세부전공’과목과 박사과정의 ‘세부전공1’과목은 해당 과목을 담당하였던 교수들 중 대상 수험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했던 교수가 출제한다. 단, 교수가 강사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출제가 어려운 경우는 학과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세부전공과목의 내용 난이도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다.
- ③ 박사과정의 ‘세부전공2’과목은 해당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출제한다. 단,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세부전공과목의 내용 난이도를 조정하여 출제할 수 있다.

제8조(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채점 및 합격 기준) ① 채점은 출제교수가 한다.

- ② 각 과목은 80/100점 이상을 획득함으로 합격한다.
- ③ 석사과정은 세부전공 1과목 및 공통과목 3과목 이상, 박사과정은 세부전공1&2 과목 및 공통과목 3과목 이상 합격해야 한다. 단,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공통과목의 높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세부전공과목의 합격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험 및 응시시기) ① 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은 한 학기에 한번, 7월 마지막 금요일 혹은 1월 마지막 금요일에 실시한다.

- ② 모든 학생은 공통과목의 경우 입학한 첫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응시할 수 있다. 단, 세부전공의 경우 2기부터 응시할 수 있다.
- ③ 학위자격시험 중 공개발표는 학과장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0조(학위자격시험의 전공시험 재시험) ① 석사과정의 경우 3기 이상이면서 50/100점 이상을 얻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자 발표로부터 한 달 후 해당과목을 다시 보는 재시험의 기회를 한번 준다.

- ② 재시험의 문제는 원래 시험의 문제와 다를 수 있으며, 80/10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격으로 한다.

제4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1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①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 ②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③ 기타 일반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12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SCI(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위청구논문의 대체)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위과정 동안 게재 또는 게재 승인된 SCI(E)논문으로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학위청구논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1. 본교 박사과정으로 진학
 2. 대체를 원하는 SCI(E) 논문의 주저자
- ② 주저자에 2인 이상의 석사과정 학생이 포함된 경우 해당 논문은 1회에 한하여 석사청구논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5장 복수학위제

제14조(과정) ① 석사과정 중 복수학위제로 KHU/Ecole Polytechnique 복수학위제를 둔다.

② 복수학위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KHU/Ecole Polytechnique 복수학위제 운영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학과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편

제15조(학과운영위원회) 학과운영위원회는 대학원 학과장과 그 외의 교수 2인의 총 3인으로 한다. 2인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다.

제16조(교과과정의 검토) 학과운영위원회는 학과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특히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국가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최소 4년에 1회 이상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0년 10월 개정하여 200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10월 제정되어 2004학년도 전기 전형부터 적용된다.(제2장. 입학시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5월 개정하여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3장. 학위자격시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9월 개정하여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4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삽입)

제 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2년 9월 개정하여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5장. 복수학위제 삽입)

제2조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4월 개정하여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제4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변경, 제5장. 복수학위제 변경)

제2조(경과조치) 본 내규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일반대학원 내규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장. 학위자격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본 내규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KHU/Ecole Polytechnique 복수학위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이하 “본교”라 한다)와 Ecole Polytechnique간의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수학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복수학위제”라 함은 본교와 Ecole Polytechnique에서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양교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양교에서 각각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수학기간 및 신분) ① 복수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원생의 수학기간은 본교에서 2학기, Ecole Polytechnique에서 3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학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복수학위 취득을 위하여 Ecole Polytechnique에서 수학하는 본교 대학원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 재학생으로서 학적을 보유한다.

제4조(선발시기 및 필요서류)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선발절차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입학시험) 복수학위제는 석사과정 전형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6조(학점인정) ① 복수학위제 이수학생은 본교 및 Ecole Polytechnique의 교육과정을 양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교 학생이 Ecole Polytechnique에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에 관한 인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③ 본교 학생이 Ecole Polytechnique에서 취득한 학점의 최대인정범위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로 한다.

④ Ecole Polytechnique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 범위는 본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른다.

제7조(수학기간) ① 복수학위제 이수학생의 Ecole Polytechnique 수학기간은 3학기인 한다.

② 복수학위 이수학생은 Ecole Polytechnique 수학 중 대학원장의 승인 없이 수학을 포기할 수 없다.

제 8조(등록 및 학위수여) ① 본교 대학원 학생은 본교 등록 절차에 따라 매학기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복수학위제 이수학생은 본 대학원과 Ecole Polytechnique의 양교 교육과정 규정에 따라 졸업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복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9조(등록금납부) ① 등록금은 5학기의 복수학위제 기간 동안 본교 대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및 기타 복수학위제 운영과 관련하여 Ecole Polytechnique에서 진행되는 기간에는 본교 대학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0조(졸업요건)

①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하는 경우 : 본교에서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 경우로

1. 예비계획서 제출 및 논문지도 학점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본 대학원 학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교에 제출한 졸업논문은 Ecole Polytechnique에도 제출해야 한다.

② Ecole Polytechnique에서 마지막 학기를 하는 경우 : Ecole Polytechnique에서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경우로

1. 본 대학원 학칙 및 세칙을 따르지 않고 Ecole Polytechnique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Ecole Polytechnique의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졸업가능여부가 결정된다.)

2. 중간평가를 통과한 학생이 최종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지도교수 간 협의를 통해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3. 논문 제출을 위하여 학위과정 중 반드시 논문지도학점을 본교에서 한 개 이상 취득한다.

4. Ecole Polytechnique에 제출한 졸업 논문(보고서)은 다음 해 1월 첫째 주까지 본교에도 제출해야 하고 본교의 석사학위는 다음 해 2월에 받을 수 있다.

5. Ecole Polytechnique에서 타 기관 인턴쉽(Programmes de Stages)을 할 경우, 연구결과를 졸업논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제한한다.

6. Ecole Polytechnique 1 ECTS는 경희대학교에서 0.6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1조(규정준수) ① 복수학위제 이수학생은 본 대학원과 Ecole Polytechnique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Ecole Polytechnique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12조(기타)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적용상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과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2년 9월 개정하여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 본 지침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 학칙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3년 4월 개정하여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제5조. 입학시험)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구 지침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지침을 적용 받을 수 있다.